시행일: 2021.02.18. 입력자:김경탁 확인자:홍준표

# 연구윤리및진실성확보를위한규정

### 제 1 장 총 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본 대학교 연구윤리 및 진실성을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,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대상) 이 규정은 본 대학교내 연구개발 활동과 직·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본교의 교원, 직원, 연구원, 대학생, 대학원생에 적용한다.
- 제3조(적용범위)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다.
- 제4조(용어의 정의) ①연구 부정행위(이하 '부정행위'라 한다)라 함은 연구의 제안, 연구의 수행,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'위조'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,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.(개정 2020.08.27.)
  - 2. '변조'는 연구 재료· 장비·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·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.
  - 3. '표절'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,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(개정 2015.08.28., 2016.10.25.)
    - 가.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 용하는 경우
    - 나.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·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 시를 하지 않는 경우
    - 다.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

- 라.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(개 정 2015.08.28., 2016.10.25.)
- 4. '부당한 저자 표시'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,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(개정 2015.08.28., 2016.10.25., 2020.08.27)
  - 가.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
  - 나.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
  - 다.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· 발표하는 경우
- 5. '부당한 중복게재'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,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(개정 2016.10.25.)
- 6. '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'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(개정 2016.10.25.)
- 7. 그 밖에 인문·사회 및 과학기술 분야 등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 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(개정 2015.08.28.)
- 8.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·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②'제보자'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대학 또는 연구 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.
- ③'피조사자'라 함은 제보 또는 대학·연구지원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,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 되지 아니한다.
- ④'예비조사'라 함은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.(개정 2016.10.25.)
- ⑤'본조사'라 함은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.(개정 2016.10.25.)
- ⑥'판정'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에게 문서로서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.

#### 제 2 장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

- 제5조(구성 등)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10인 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 장 및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.
  - ②위원회는 교무처장, 연구처장, 연구윤리지원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, 임명직 위원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(개정 2015.08.28.)
  -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- 제6조(위원장)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회의를 주재한다.
- 제7조(간사) 위원회에 간사1인을 두어 제반 행정사항을 처리하며 간사는 연구 윤리지원센터 직원 또는 연구원 중에서 임명한다.(개정 2015.08.28. 2021.02.18) 제8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  - 1. 연구윤리 · 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 - 2. 연구윤리강령 등 관련 규정의 제 · 개정에 관한 사항
  - 3.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
  - 4. 본조사 착수여부 및 조사결과의 판정, 승인 및 재심의에 관한 사항
  - 5.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에 관한 사항
  - 6.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
  - 7.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- 제9조(회의)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 -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- ③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#### 제 3 장 제보 및 접수

- 제10조(심의) ①제보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연구윤리지원센터에 구술·서면·전화·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서 실명으로 제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(개정 2015.08.28., 2019.05.28)
  - ②전 항에도 불구하고 익명 제보는 연구과제명, 논문명,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,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.(개정 2019.05.28)

- ③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,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.
- ④ (삭제 2014.01.10.)
- 제11조(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·비밀엄수) ①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·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,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 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.
  - ②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, 근로조건상의 차별,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을 경우에는 그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  - ③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, 부정행위와 무관한 것으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  - ④제보·조사·심의·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, 조사에 직·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직무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.
- 제12조(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)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,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.

### 제 4 장 예비조사

- 제13조(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) ①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,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.
  - ②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.
    - 1. 제보내용이 제4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
    - 2.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
    - 3. (삭제 2014.01.10.)
    - 4.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(신설 2016.08.30.)
  - ③예비조사는 연구윤리지원센터에서 담당하되,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

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.(개정 2015.08.28.)

- 제14조(예비조사 결과의 보고) ①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  - ②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  - 1. 제보내용
    - 2.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과제
    - 3.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
    - 4. 기타 관련 증거자료

#### 제 5 장 본 조 사

- 제15조(본조사 착수·기간) ①본조사는 위원회의 본조사 실시 결정 후 30일 이 내에 착수하여야 하며,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
  - ②본조사는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한다.
  - ③조사위원회에서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1회에 한하여 기간연장 요청을 할 수 있다.
- 제16조(조사위원회의 구성) ①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- ②조사위원회 위원구성 및 위촉기간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조사 위원회 위원장은 조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 - ③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2분의 1이상 포함하며,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조사위원회 위원 30% 이상의 외부인사를 위촉하며, 외부인사 중 1인 이상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위촉한다. 다만, 피조사자가 본 대학교 직원인 경우 위원 중 5분의 1 이상을 해당 분야에 경험이 있는 직원으로 위촉한다.(개정 2016.10.25.)
  - ④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다.
- 제17조(출석·자료제출 요구) ①조사위원회는 제보자·피조사자·증인 및 참고 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 시 응하여야 한다.
  - ②조사위원회는 피조사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증거자료의 보전

- 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, 해당 연구 자료의 압수·보관 등을 할 수 있다.
- 제18조(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) ①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및 변론내용을 토대로 본조사결과보고서(이하 '최종보고서'라 한다)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다.
  - ②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  - 1. 제보내용
    - 2.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
    - 3.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
    - 4. 관련 증거 및 증인
    - 5. 조사결과
    - 6. 조사위원 명단
    - 7. 기타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
- **제19조**(판정) ①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,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 - ②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20조(이의신청·재심의)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.

### 제 6 장 검증 이후의 조치

- 제21조(연구지원기관등에 대한보고) ①최종보고서는 연구지원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총장의 승인하에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(개정 2016.10.25, 2021.02.18)
  - ②연구부정행위의 검증결과를 해당 논문의 발간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.(신설 2016.10.25.)
- 제22조(결과에 대한 조치) ①위원회는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총장에게 징계 또는 기타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.
  - ②징계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의한다.
  - ③총장은 징계 및 제재조치가 결정되면 그 사실을 해당 교직원에게 서면으로

통지하여야 한다.

제23조(기록의 보관·공개) ①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위원회 주 무부서인 연구윤리지원센터에서 5년간 보관한다.(개정 2015.08.28.)

②본조사의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. 다만, 제보자·조사위원·증인·참고인·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.

### 제 7 장 보 칙

제24조(경비) 위원회 운영 및 조사에 필요한 예산은 별도로 책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**제25조**(준용)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를 준용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01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08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08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05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## 3-3-13~8 제3편 행 정

이 규정은 2020년 08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# 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0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